

의안번호	2217094
의 퇴 인	김기웅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0.
추계번호	26A1092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4제1항(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－ 1. 제품·서비스 등의 홍보, 컨설팅 및 판로 개척, 경영개선 교육 － <u>1의2. 지역 문화·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·홍보</u> － 2.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－ 3.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－ 4. 세무·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－ 5.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－ 6. 전통기술의 보존·전수 및 상품화 지원 － 7.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－ 8.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, 조사 － 9.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, 박람회·전시회 등의 개최 － <u>10.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</u> － <u>11. 직접용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</u> － 12.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※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지역 문화·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·홍보,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, 직접용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를 추가하려는 것임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4제1항(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에 지역 문화·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·홍보,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,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를 추가하려는 것임

○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여 홍보를 지원하고, 온·오프라인 기획전 및 전용판매장을 지원하는 등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－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예산으로 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’ 세부사업의 내역 사업인 ‘백년소상공인육성’ 사업에 14억 7,200만원이 편성됨

※ [참고자료] 백년소상공인 현황

[표 1] 백년소상공인육성 예산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-내역사업	2024	2025	2026
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6)	427	427	1,472
－ 백년소상공인육성			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범위를 지역 문화·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·홍보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·관광자원과 연계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·홍보,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가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
- 한편, 개정안 제16조의4제1항제11호에 따른 “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”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융자지원 사업¹⁾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으로,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·관광자원과 연계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·홍보 사업 및 고객 이용 편의 증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2026년 소상공인지원(융자)(4151-301) 사업 예산에 3조 3,620억원이 편성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백년소상공인 현황

(자료: 중소벤처기업부)

□ 백년소상공인 정의 :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,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

* 「소상공인법」 개정('24.1.16)

- (백년가게) 제조업 제외,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공인(유효기간 5년)
- (백년소공인) 제조업,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(유효기간 5년)

□ 지원내용

- (지정·홍보) 인증서 및 현판, 스토리보드 제공, 온·오프라인 홍보 등
- (판로지원) 민관 협업을 통한 온·오프라인 기획전, 전용판매장 지원 등
- (기타지원)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지원(강한소상공인, 소공인특화, 정책자금 등 가점·우선지원), 온누리상품권 가맹특례 부여 등

□ 현황

- 연도별 지정현황 : 8년간('18~'25) 총 2,326개 지정('25.12월 기준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계
예산(억원)	6	8.2	13.4	58.5	76.9	22.9	4.27	4.27	194.4
백년가게	71	204	339	427	230	86	—	50	1,407
백년소공인		71	181	390	175	52		50	919
합계	71	275	520	817	405	138	—	100	2,326

○ 지역별·업종별 현황

① 백년가게

연번	지 역	개수(개)	비율(%)	연번	지 역	개수(개)	비율(%)
1	경기	192	13.6	10	충남	79	5.6
2	서울	168	11.9	11	인천	50	3.6
3	경남	119	8.5	12	광주	65	4.6
4	경북	127	9.0	13	대구	79	5.6
5	전북	89	6.3	14	대전	44	3.1
6	충북	88	6.3	15	울산	26	1.8
7	부산	82	5.8	16	제주	21	1.5
8	강원	94	6.7	17	세종	8	0.6
9	전남	76	5.4	합 계		1,407	

구분	음식점	도소매	서비스	기타	합계
개수(개사)	933	318	114	42*	1,407
비율(%)	66.3	22.6	8.1	3.0	100

② 백년소공인

연번	지 역	개수(개)	비율(%)	연번	지 역	개수(개)	비율(%)
1	경기	209	22.7	10	충남	36	3.9
2	서울	111	12.1	11	인천	38	4.1
3	경남	63	6.9	12	광주	46	5.0
4	경북	65	7.1	13	대구	55	6.0
5	전북	60	6.5	14	대전	54	5.9
6	충북	37	4.0	15	울산	12	1.3
7	부산	51	5.5	16	제주	7	0.8
8	강원	34	3.7	17	세종	4	0.4
9	전남	37	4.0	합 계		919	

구분	기계금속	의류	인쇄	식료품	기타*	합계
개수(개사)	286	106	83	179	265	919
비율(%)	31.1	11.5	9.0	19.5	28.8	100

* 전자부품 28개, 공예도자 11개, 기타(플라스틱, 펄프종이 등) 226개